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126호
- 나. 발 의 자 : 최기찬 의원외 29명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 전반을 규정하고 있어, 전통사찰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항, 전통사찰 보전위원회 구성의 상세한 규정 등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미비한 실정임.
- 이에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사찰 부분을 삭제하고, 별도의 전통사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위임 근거인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부분을 삭제함(안 제1조).

- 나. 전통문화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항).
- 다. 전통사찰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제2호의 삭제).
- 라.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부분을 삭제함(안 제9조의 삭제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내 규정된 ‘전통사찰’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-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정의 규정, 전통사찰 예산지원 근거 규정,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규정이 별도 조례에 반영되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지금까지 서울시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해온 사업들은 대부분 불교문화와 전통사찰을 지원하는 것으로, 전통사찰 관련 조례가 별도 제정되면 동 조례의 실질적 역할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음.

< 2023년 동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 현황 >

연번	사업명	예산	지원 근거
1	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	27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2	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	4,33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3	진관사 국행수륙재 지원	10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4	태고종 영산재 지원	100백만원	제5조(전통문화 보존·관리·육성 및 지원대상)
5	템플스테이 지원	520백만원	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
6	한국전통 불교문화 프로그램 지원	1,508백만원	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
7	연등회 행사지원	1,150백만원	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

- 또한,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어 전통문화의 보존·관리 및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최근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. 따라서 법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통문화의 정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드림.

< 수정의견 >

현 행	개 정 안	수정의견
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·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전통사찰”이란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무용·음악·미술·건축·음식·의상·공예·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문화”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전통예술: 전통무용, 전통음악,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</p> <p>2. 전통생활양식: 한복 등 의생활, 식생활, 주거생활, 한지,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의안번호
1126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최기찬 의원	2023.8.14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<p><개정 필요성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 전반을 규정하고 있어, 전통사찰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항,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구성의 상세한 규정 등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미비한 실정임. ○ 이에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전통사찰 부분을 삭제하고, 별도의 전통사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 <p><주요 입법 요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통사찰 지원에 대한 위임 근거인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부분을 삭제함.(안 제1조) ○ 전통문화의 정의 중 ‘전통사찰’을 삭제함.(안 제2조제1항) ○ 전통사찰의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함.(안 제5조제2호의 삭제) ○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부분을 삭제함.(안 제9조의 삭제) 		
추진경과	○ 조례 개정안 발의(최기찬 의원, 2023.8.14.)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별도 쟁점사항 없음		
대응방안	○ 별도 쟁점사항 없음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
향후계획			
담당부서	문화정책과	팀장 김용환(☎2133-2520)	담당 이인식(☎2133-2530)